

2024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사회통합전형 관련 Q&A

서울시교육청 디지털·혁신미래교육과

1 사회통합전형 개요

Q1 사회통합전형은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나요?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유형 및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대상자	지원 자격
기초생활수급권자 우선선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근거하여 주민센터에 등록된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 및 60% 이하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갑작스런 사유로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학교장이 판단·추천한 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포함
사회다양성지원전형 (가정경제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당시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소년·소녀가장/조손가족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이외 소년·소녀가장 또는 조손가족의 자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
	순직 군경·소방관·교원·공무원 자녀	순직군경, 순직소방관, 순직교원, 순직공무원의 자녀
	한부모가족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제5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회균등전형으로 지원
2순위	다자녀가족(3자녀 이상) 자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의 자녀(자녀 모두 지원 가능)
	군인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중령 이하 군인 자녀
	경찰(해양경찰)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경감 이하 경찰(해양경찰) 자녀
	소방공무원의 자녀	15년 이상 재직 중인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으로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의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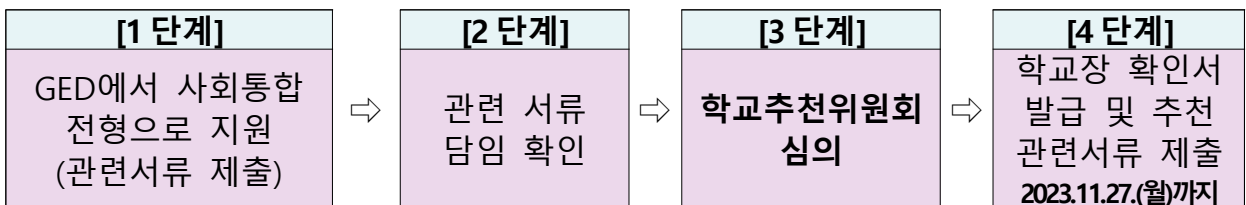
Q2 사회통합전형 지원 및 추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아래 표와 같이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와 기회균등전형, 사회다양성 전형 중 해당되는 유형에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지원자 공통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단, 다음 지원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부' 또는 '모' 기준: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족 - '자녀(지원자)' 기준: 한부모가족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지원 신청서 [서식1]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학교장 확인서 [서식2] 	구청,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지원자 및 학교 작성	
기회균등전형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 수급자 증명서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정부24(홈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정부24(홈페이지), 복지로(홈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택1)	소속학교 (또는) 관할 보훈지청
		교육지원 대상자 외	○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관할 보훈지청, 정부24(홈페이지)
	법정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차상위장애수당대상자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장애연금대상자	○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센터, 복지로(홈페이지)
	기준중위소득50% 이하	기준중위소득50%이하	○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	구청, 주민센터, 학교
기준중위소득60% 이하	기준중위소득60% 이하	○ 교육비지원 확인서	학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 추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형편이 곤란함을 증빙하는 기타 제반 서류 -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내역서(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병원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영수증 등 -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가출, 연락두절 기타 가정형편으로 부모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 추천서」 또는 「자기확인서」에 동 사실을 명기 - 어느 한 가지 서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재산세 과세 증명 등을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 ○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 	해당 증빙서류별 확인 가능한 기관	
		○ 학교장 확인서 [서식2] 의 추천사유 란 작성	학교	

지원유형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사회다양성전형	공통 (가구원수별 중위소득 160% 이하)	지역건강보험료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공단(홈페이지)
		직장건강보험료, 혼합(지역+직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6개월 평균 납부액) ○ 재산세(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1부 - 반드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으로 발급받아 제출(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발급, 온라인 발급 불가)	
		1순위	다문화가족 자녀	○ 부 또는 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인의 기본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가 외국 국적자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 사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 이탈 주민등록 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통지서 사본		
	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족의 자녀	○ 사실 관계 확인서(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순직 군경·소방관·교원· 공무원 자녀	○ 순직군경, 순직소방공무원, 순직교원, 순직공무원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2순위	한부모가족 자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서류 발급기관
	다자녀 가족 (3자녀 이상) 자녀	○ 추가서류 없음		
	환경미화원의 자녀 (시·도 또는 군·구 소속 환경미화원)	○ 재직증명서		
	군인 자녀 (중령이하)	○ 15년 이상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경찰(해양경찰) 자녀 (경감이하)				
소방공무원 자녀 (소방경이하)				

□ 학교에서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 절차



2

유형에 따른 지원자격 및 산정방법

기회균등전형

Q3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전형 대상은?

- 지원 학생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이거나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전형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서 본인, 부 또는 모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대상자 확인 후 전형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균등전형 보훈자 자녀 범위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보훈대상자로서 아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경우

예시)

1. 증조 할아버지께서 독립유공자로서 지원 학생의 부가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2.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로 전사하여 모가 국가유공자 유족 확인원 발급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보훈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3호~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제3호	5·18민주유공자 (유족) 확인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제3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확인원
■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확인원

- 국가보훈처에서 보훈자 자녀로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된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4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에는 어떤 경우가 해당 되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50% 및 60%이하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최근 가정에서 갑작스런 사유(부모의 사망, 사업의 파산, 실직 등)로 기준중위소득 50~60%이하 수준으로 급격히 어려워진 가정의 자녀 중 (전형 지원 시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학교장이 판단·추천하는 경우입니다.
- 학교에서는 실직급여수급증서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결정문, 폐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추천합니다.
-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학생 또한 이 전형에 포함됩니다.

■ 사회다양성전형

Q5

사회다양성전형 필수요건인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지원자가 해당하는 유형에 따른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이하 가정의 자녀

[2023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기준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2인	157,523	197,299	200,343	697,200
3인	229,312	255,791	261,015	1,073,040
4인	293,801	309,670	320,126	1,444,080
5인	354,030	359,887	379,133	1,801,200
6인	436,179	434,962	476,875	2,145,600
7인	481,248	476,875	521,613	2,483,520
8인	527,523	521,613	563,270	2,821,200
9인	570,140	563,270	625,329	3,158,880
10인	628,210	625,329	729,187	3,496,560

*표: 보건복지부 고시(제2022-191호)에 따름

분류	내용
지역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이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재산세 과세내역 확인 불필요 ※ "지역건강보험료 전환자 중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주의2 확인)
직장가입자 혼합가입자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의 부모(※이혼한 경우 친부 및 친모)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평균 금액 합산액 및 2023년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액 두 조건 모두 기준표 해당 금액 이하인 가구

※ 주의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란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을 의미
- 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합산에서 제외
- 건강보험 연말정산금액을 분할납부한 경우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을 제출해야 함
(발급방법) 재직 중인 사업장 업무담당자에게 신청,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로서 자격확인서의 자격취득일이 최근 1년 이내 변동이 있을 경우(건강보험료를 납부 하던 부 또는 모가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고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주의 2.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

- 재산세(주택분) 과세금액이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주택 과세 합산금액'을 의미
- 전국에 소유한 모든 주택(아파트)에 대한 과세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토지, 상가 등에 대해 과세된 재산세는 미포함
- 지방세 부과된 지역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 각각 발급해야 함
(발급방법)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주민자치센터(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함

Q6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일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소득 및 재산은 제외됩니다.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께서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됨 (※건강보험료 산정은 소득에 의함, 피부양자수에 따라 가산되지 않음)

Q6-1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삼촌 가정과 같이 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부양자가 (외)할아버지이며, 다른 가족은 전부 피부양자입니다. 또한, 재산세의 경우 (외)할아버지께서 대부분을, 아버지, 삼촌께서 일부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외)할아버지께서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납부하고 다른 가족이 전부 피부양자일 경우 할아버지와 다른 가족을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하며, 재산세 부과 내역은 할아버지를 포함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각각의 재산세 부과액 중 주택분 내역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Q7

부(또는 모)가 지방에서 근무하여 주민등록에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가족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원 수가 아닌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가족구성원 중 부, 모, 자녀만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Q8

주민등록상 부모님이 계시지만 실제로 할머니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주민자치센터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기회균등전형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전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에 따라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부모의 장기 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고 할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9

재산세 과세 금액을 위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과세에서 ‘재산세(주택)’ 으로 되어 있는 과세 내역만 합산(7, 9월 과세금액)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주택) 이외 재산세 과세 시 포함되어있는 토지, 상가,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주민자치센터(또는 구청)를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는 과세가 있는 지역 증명서와 과세되지 않은 지역 증명서를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3-1, 3-2 참조. p.17~18)

Q10

부(또는 모)가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일부 또는 전 기간 실직한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등)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일부 기간 실직한 경우(소득이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 등) 가입자 건강·장기보험료 납부 확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고지된 달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단, 이러한 부모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것이 최근 1년 내인 경우, 피부양자의 최근 1년간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가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 4개월간 근무하였을 경우: 4개월간 근무에 따른 건강보험료 ÷ 4개월
- ※ 전형일 이전 6개월보다 그 이전에 실직한 경우: 전형을 위한 산정기간(전형일 이전 6개월)에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

Q11

부(또는 모)가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휴직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합니다.
- ※ 전형일 이전 6개월 중 중간 휴직인 경우에도 동일(휴직전 6개월간 실제 고지된 금액으로 산정)

Q12 부모님의 소득 이외에 미혼으로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남매(이하 형제로 통칭)도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와 보험료 및 재산세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 부모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전형을 시행함으로 형제의 소득 및 재산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 미혼인 형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구원 수로 산정됩니다.
※ 미혼인 형제가 성인인 경우 형제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아 미혼임을 확인

Q13 다자녀 가족(3자녀 이상)으로 미혼인 형제가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타 시도에 거주하고 있는 미혼인 형제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Q14 기혼인 형제가 다른 세대로 구성한 경우 다자녀 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하나요?

- 다자녀가족 전형은 형제·자매의 결혼 여부와 관련 없이 3자녀 이상이면 다자녀가족 자녀전형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결혼하여 다른 세대를 구성한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Q15 부모, 기혼인 형제 가족, 미혼인 형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구원 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수 산정은 부모와 자녀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 모, 형제, 학생 본인만 가구원 수로 산정됩니다. 다만, 기혼자인 형제의 경우 최소 원서접수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Q16 입양을 통한 다자녀의 경우에도 다자녀가족 자녀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17

한부모 가족과 다른 한부모 가족과의 결합에 따른 다자녀 가족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다자녀 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를 양부(또는 양모)가 입양하여 가족 구성원으로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자녀 중 동거인으로 있는 경우 다자녀 대상 아님)
이 경우 다자녀가족 전형으로 결합된 가정의 부모의 소득과 재산 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금액 이하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예: 양부+친모 소득 및 재산세(주택) 과세금액 합산, 친부의 재산세 및 건강보험료는 합산에서 제외)

Q18

한부모 가족인 경우 가구원 수 산정, 소득과 재산은 어떻게 합산해야 하나요?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이혼 전 친부, 친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가족 구성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합니다.
(예: 부, 모, 형제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이혼으로 인하여 부(또는 모)와 분리되어 살고 있는 경우 원가족인 부, 모, 형제 2명 4인 가구로 산정)
- 사별 또는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우 친부 또는 친모의 소득 및 재산 내용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 한부모가족의 경우에도 친부 및 친모와 합산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과세 금액 모두 [표]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160%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및 재산세 과세금액 기준표 금액(Q5 참조) 이하여야 합니다.

Q19

한부모 가족으로 친부(또는 친모)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해당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한부모가족의 경우라도 친부 및 친모의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정폭력 등에 따른 보호조치 등의 처분으로 친부(또는 친모)와 연락이 곤란한 경우 보호조치 등 이혼 관련 서류(예시: 판결문)를 첨부하여 현재 가족구성원인 친모(또는 친부)의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수는 부를 제외한 모와 자녀만으로 산정됩니다. 친부(또는 친모)가 행방 불명인 경우에는 행방 불명 관련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Q20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1호)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예시) 결혼이민자(국적법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와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정

※ 재한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Q21 아버지가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인 어머니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으로 지원가능한가요?

-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 및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 따라서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아버지의 경우 재한외국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22

우리나라 국적인 부(또는 모)와 외국인 모(또는 부)가 우리나라로 귀화하여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으나, 현재 이혼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다문화가족 전형에 지원 가능할까요?

- 다문화 가정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지원 자격을 인정합니다.

Q23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며, 모(또는 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부 또는 모 중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Q24

부(또는 모)는 외국 국적이며, 모(또는 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학생이 아버지의 국적에 따라 외국 국적인 경우 다문화 가족 전형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25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의 자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은 어떤 경우인가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목 차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14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양식)	16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17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	18
참고 4. 복지로 사이트 서류 발급 방법	19
참고 5.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21

참고 1. 건강보험료 기준 및 가구원 수 적용, 증빙서류 발급 방법

① 가구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료서 해당 학생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 및 2촌 이내의 형제·자매 [※(외)조부, (외)조모 제외]
 - ※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또는 미혼인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 기혼인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포함(단, 원수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만 인정). 주민등록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미포함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친부 또는 친모)를 포함하여 가구원 수 산정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 시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부모 중 1명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제출)에 부모가 모두 있는데 건강보험증 사본에 학생만 있거나 부모 중 한 명만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금액을 확인하여 합산
 -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경우 친부와 친모 건강보험료 합산
- 학생이 직장에 다니는 형제·자매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부모의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확인하여 합산

③ 건강보험료 산정 및 적용 방법

- (산정) 건강보험증에 부양자로 등록된 부모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합산한 금액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연말정산금액(분할)납부청구액은 제외)
 - 소득이 없는 달(한시적으로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간 경우)은 기간에 산정하지 않음
 - 휴직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시 휴직 전 납부된 건강보험료로 산정
 - ※ 입학 지원서 제출 당시 복직한 경우 복직 후 납부한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 (적용)
 - ※ 부모가 각각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와 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지역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다른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직장보험료 기준 적용
 - 부모가 각각 지역건강보험과 직장건강보험 부양자인 경우 : 합산 후 혼합보험료 기준 적용
- (사례)
아버지는 직장건강보험 부양자로 4만원 납부하고 어머니는 지역건강보험 부양자로 2만2천원 납부하는 4인가구의 경우 : 4만원(부)+2만2천원(모)⇨가구 건강보험료(혼합 6만2천원)

④ 제출 자료 발급 방법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을 위한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homepag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여기요', '건강IN', '정책센터', '국민과함께', and '공단요조모'. The breadcrumb trail is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보험료 납부확인서'.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보험료 납부확인서' and includes a notice about online issuance, a '알려드립니다' (Please be aware) section with details on eligibility and issuance dates, and a table for selecting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and '연금보험' (Pension Insurance). A '조회' (Search) button is at the bottom.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The screenshot shows the '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homepage. The navigation bar includes '민원여기요', '건강IN', '정책센터', '국민과함께', and '공단요조모'. The breadcrumb trail is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득실확인서'.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자격득실확인서' and includes a notice about online issuance, a '알려드립니다' (Please be aware) section with details on eligibility and issuance dates, and a '조회' (Search) section with a '주인등록번호' (Owner Registration Number) field and a '조회조건' (Search Conditions) dropdown menu.

참고 2.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양식)

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명칭			①			납부자번호		
2022년 01월 ~ 2022년 12월 납부내역 (단위:원)								
월별	고지금액				납부금액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액 (요양)	건강 보험료	장기요양 보험료	소득월액 (건강)	소득월 액(요양)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②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말정산	③							
합계								
납부총액			용도구분			납부확인용		
위와 같이 보험료를 납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인)								
① 사업장 명칭: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자 명칭이 기재되어 있음 (*지역가입자 사업자 명칭 없음) ②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으로 원서 제출 기준 최근 6개월 평균 금액 산출 ③ 연말정산: 전년도 연말정산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감분 (*산정에서 제외) ※ 연말정산 금액을 5~10회 분할 납부한 경우: 재직하는 사업장의 업무담당자 신청으로 “개인별 고지 산출내역(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하여 발급 가능(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여야만 발급 가능) - 유선 발급 시 공단 전산에 등록된 해당 사업장의 팩스번호로만 전송 가능								

참고 3-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된 지방세(주택) 양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민(법인, 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 Foreign) Registra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연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재산세 주택 ①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재산세 주택 ②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소계					
<p>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YYYY/MM/DD)</p> <p>신청인 성명(법인명): Applicant Name(Name of Corporation)</p> <p>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발 신 명 의(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_____</p>					
<p>※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p>					

- ※ 재산세 주택①, ② 금액 합산 (기타 과세 내역제외)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는 인터넷 정부24에서는 발급되지 않으며, 직접 주민자치센터 방문하여 발급하여야 함
- ※ 지방세 부과된 지역 및 부과되지 않은 지역(참고 3-2) 각각 발급하여야 함

참고 3-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과세되지 않은 지방세(주택) 양식
(예: 서울 외 지역에 재산세(주택)이 없음을 증명하는 사례)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서식] Page : 1/1

발급번호 2023-110-530-000578
Issuance Number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Local Tax Assessment Certificate

납세자 TaxPayer	성명(법인명) Name(Name of Corporation)	주인(법인,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Corporation,Foreign) Registration No.			
	주소(영업소) Address(Business Office)				
상호 Company Name			사용목적 Purpose of Use	재증명을 위한 서류제출	
과세대상 Tax Objects					
세목 Tax Items	부과년월 Tax Year-Month	부과유형 Tax Pattern	과세번호 Tax No.	세액 Tax Amount	비고 Remarks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과세년도 : 2022 - 2023 년]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 style="text-align: center;">재산세(주택)</p>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p> </div>					

위와 같이 과세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tax assessment is true and correct.

2023년 04월 13일(YYYY/MM/DD)

신청인
Applicant

성명(법인명)
Name
(Name of Corporation)

주소(영업소)
Address
(Business Office)

서울특별시 구청장 **정장인**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 Government of Jongno-gu

※ 이 증명서는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is certificate does not verify the ownership of any properties.

500001
승지정행시각 15.24.06.153

참고 4. 복지로 홈페이지 서류 발급 방법

공통인증서 내보내기 복지소식 복지포 소개 고객센터 사이트맵 화면크기 + 100% -

복지로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로그인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화면 따라하기
복지서비스 신청서식

민원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가족정보 제공동의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직권신청요청 동의
증빙서류 제출
화면 따라하기

증명서발급-진위확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진위 확인

★ 자주 찾는 서비스

복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복지지도
복지도움
복지신고

내 손안의 복지/
복지로 모바일앱
바로가기

간편 인증

PAYCC KID-인증 PASS TALK SAMSUNG Pass 신한은행 N

간편인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은 3G폰 이상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용안내 **간편 인증 로그인**

증명서발급

증명서 발급 안내

- 증명서 발급은 기초연금수급자 확인서를 포함하여 6종을 누리이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종은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외부 사이트로 링크)
- 신청서 작성 후 '복지지갑-증명서 발급내역에서 출력, 정보전자문서지갑 전송, 콰덱스 전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발급 수량은 1부만 가능하며, 당일 발급 신청한 증명서는 당일(23시 59분)까지만 출력이 가능합니다.
-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계층확인' 자격보유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격보유여부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가능)
- 자활근로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메뉴에서 발급 가능

발급 서비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	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발급신청	장애인 증명서	발급신청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	한부모가족 증명서	바로가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제증명	바로가기		

발급안내

- 처리기간: 즉시(당일 24시 이내)
- 수수료: 없음
- 구비서류: 없음
- 신청자격: 본인(온라인 신청은 대리인 신청 불가)

참고 5.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민원여기요

건강IN

정책센터

국민과함께

공단요모조모

Q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증명서 발급/확인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개인민원

개인민원업무 목록

증명서 발급/확인

- 자격확인서
-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원납증명서
- 보험료 납부확인서
- 보험료 미납내역서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확인서
- 기타징수금 납부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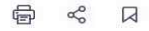
- 건강보험증 우편발급 신청
- 증명서 진위확인
- 증명서 팩스발급 처리결과 조회

자격조회

보험료 조회/신청

보험료 납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경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조회결과를 선택하여 프린트로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하여 관련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명의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조회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조회내역